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89
----------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개정구분 : 부분개정

제안이유 :

-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설계자로 지정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자 지정업무를 안산시건축사회에 위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위법건축물을 근절코자 함.
- 대지 안의 조경의무에 있어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 필요 조경면적을 일반 건축물보다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축소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골자 :

- 가. 건축허가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설계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2항).
- 나.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자 지정업무를 안산시건축사회에서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4항).
- 다.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일률적으로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조경을 하도록 하던 것을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에는 10퍼센트이상으로 완화함 (안 제12조제1항제1호).
- 라.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조경면적 전체를 조경기준면적에 산입함 (안 제12조제2항제1호).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건축법 제23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27조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업 계획서 : 해당없음

사전(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01. 8. 21. ~ 8. 31.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이를 대행한다.
2. 제1항제2호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자 지정은 안산시건축사회에 위임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자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되 대행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에는 10퍼센트이상

제12조제2항제1호의 맨앞에 “주차전용건축물의 조경면적과”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건 축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건 축 과 장 신 원 남
	담당·팀장 직위·성명	건축관리담당 김 경 환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경 환 (행정 2909)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은 공개모집 공고하여 모집하고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생략)</p> <p>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조경을 하여야 한다.</p> <p>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단서신설></p> <p>2. ~ 4. (생략)</p>	<p>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제1항제1호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이를 대행한다.</p> <p>2. 제1항제2호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은 안산시건축사회에 위임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자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되 대행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 ----- ----- ----- -----</p> <p>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에는 10퍼센트 이상.</p> <p>2. ~ 4.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삽입>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p> <p>2.(생략)</p> <p>3. (생략)</p> <p>③ ~ ⑤ (생략)</p>	<p>② ----- ----- -----</p> <p>1. 주차전용건축물의 조경면적과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p> <p>-----</p> <p>2.(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